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 협약서

[학교用]

동의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주식회사 KB 국민카드(이하 "KB 국민카드"라 한다)는 학생증 체크카드(이하 "학생증 체크카드"라 한다)발급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학교"가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에 있어 "학교", "KB 국민카드"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 업무범위, 수행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학생증 체크카드"란 본 협약에 의거 "학교"의 학생에게 "KB 국민카드"가 발행하는 학생증체크카드를 말한다.
- ② "회원"이란 "KB 국민카드"가 정한 입회절차에 따라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KB 국민카드"로부터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 ③ "학사정보"란 "학교"에서 "KB 국민카드"에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을 위하여 제공하는 성명,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학과명, 학번, 학생본인사진, 학교로고 등을 말한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학교", "KB 국민카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약한다.

1. 학생증 체크카드 모집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 학생증 체크카드 디자인 및 관련 인쇄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 4 조 (발급대상·회원자격 및 디자인)

- ①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학교"의 소속 학생으로 한다.
- ② "KB 국민카드"가 발급하는 학생증 체크카드의 발급여부, 간신여부, 발급자격 등은 "KB 국민카드"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 ③ 학생증 체크카드의 명칭 및 디자인은 "KB 국민카드"가 제안하고 "학교"가 승인한다.



제 5 조 (카드 발급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학생증 체크카드의 발급대상자 관련 심사 등은 "KB 국민카드"의 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회원모집)

- ① 학생증 체크카드 회원의 모집방법은 "학교"와 "KB 국민카드"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모집방법은 "KB 국민카드"의 내부규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우선시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 "학교"와 "KB 국민카드"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③ 양 당사자는 파산, 청산, 합병 등의 경우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해야 하며 파산관재인, 청산인, 합병된 자의 대표 등이 파기확인서를 발행할 의무를 승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 등)

- ① "학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학사 정보를 KB 국민카드에 제공한다.
- ② "KB 국민카드"는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학사정보 등"을 이용하여 "학생증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 ③ 회원의 (재)발급 요청에 정당한 학사정보로 "학생증 체크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학교"는 학사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KB 국민카드"에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KB 국민카드"는 "학교"가 학교의 학사관리 등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최소 정보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⑤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학생증”은 “KB 국민카드”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체크카드”와는 아무런 업무적 연관관계가 없다.

제 8 조 (사후관리)

양 당사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학교”, “KB 국민카드”가 본 협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의 연장여부에 대해 협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협의 요청 및 협약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학교”, “KB 국민카드”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해제 또는 해지)

- ① “학교”, “KB 국민카드”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를 요청하여 상대방에게 서면해지 요청의 통보가 서면으로 도달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1개월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으면 이 협약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 해지된다.
- ② “학교”, “KB 국민카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서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때
2.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협약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현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계속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파산, 부도, 지급정지 등으로 신용이 악화된 경우
6.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과 관련한 법률 등의 규제로 더 이상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 12 조 (영업비밀의 보장)

- ① “학교”, “KB 국민카드”는 본 협약 이행 중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학교”, “KB 국민카드”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개인(신용)정보의 누출금지)

- ① “학교”, “KB 국민카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이외로 본 협약의 수행상 알게 된 회원의 개인(신용)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제 12 조 및 본조는 본 협약의 해제·해지·만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 14 조 (협약 해지 시 카드의 기능)

“KB 국민카드”는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회원에게 학생증 체크카드의 유효기간 동안 학생증 체크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위 승계)

이 협약서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학교”, “KB 국민카드”的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등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학교”, “KB 국민카드”的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

수탁인 등에게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병 등의
포괄승계와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승계인 또는 경영 수탁인이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가진다.

제 16 조 (손해배상)

"학교", "KB 국민카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신의성실의 의무)

- ① "학교", "KB 국민카드"는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상호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본 협약상의 업무제휴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학교", "KB 국민카드"는 상대방의 로고, 명칭, 상품명
등에 대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광고·홍보 등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 3자에 대한 양도 등의 금지)

"학교", "KB 국민카드"는 본 협약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호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위탁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청렴계약)

- ① "학교", "KB 국민카드"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에서 상대방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한 "학교", "KB 국민카드"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② "학교", "KB 국민카드"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 20 조 (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서면합의로 해결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21 조 (관할 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에 발생할 경우 소송의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 (협약서의 보관)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학교",
"KB 국민카드"가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총장 공순진 (인)

【KB 국민카드】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이동철 (인)

KB국민카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사와의 계약 체결 시에 저희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금품 및 향응·편의요구
등이 있으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T 02)6936-2222 / F 02)6936-2160 / E-Mail : Wise-whistle.kkg@kfg.com

우편(03173)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